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171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8. 3. 20 선고 2017나56992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1719 판결

전문

원고 A

피고 B

변론 종결 2017. 8. 8

판결 선고 2017.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원군 C 전 2,612㎡에 관하여,
가. 별지1도면 표시 1, 2, 3, 4, 5, 6,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8, 9,
10, 11, 12, 13, 14,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7, 28,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 선내 (ㄴ) 부분 807㎡ 지상 주목나무를 수거하고, 위 (ㄴ) 부분 807㎡를 인도하고,
나. 별지1도면 표시 6, 7, 8,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6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5㎡ 지상 소나무 석축과 대리석계단 및 테라스를 철거하고, 위 (ㄷ)
부분 35㎡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8,316,298원 및 2017. 4. 15.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ㄴ) 부분 807㎡ 및 나.항
기재 (ㄷ) 부분 35㎡의 인도일까지 연 1,734,4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원군 C 전 2,61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경남 창원군 D 대 2,345㎡, E 전 935㎡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본인이 소유한 위 각 토지상에 체력단련장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 물 중 일부(소나무
석축과 대리석 계단 및 테라스 부분)가 원고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별지1도면 (ㄷ) 부분[이하
'(ㄷ) 토지'라 한다]을 침범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27,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4, 12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근을 따라 주목나무를 심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별지 1도면 (ㄴ) 부분[이하 '(ㄴ) 토지'라 한다]을 사용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1.10. 22.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ㄴ) 및 (ㄷ)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ㄴ) 토지를 누구나 통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 단독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ㄴ)토지 전체를 본인 소유의 건물로 통하는 진입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다. (ㄴ) 및 (ㄷ) 토지의 2011. 1. 1.부터 현재까지의 임료는 별지2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 F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축타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에게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토지 중 (ㄴ) 및 (ㄷ) 토지 위에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주목나무를 식재하여 경계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ㄴ) 및 (ㄷ)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ㄴ) 토지 위 주목나무를 수거하고, (ㄷ) 토지 위 소나무 식축과 대리석 계단 및 테라스를 철거하며, (ㄴ) 및 (ㄷ) 토지를 인도할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가 위와 같이 2011. 10. 22.부터 원고 소유의 (ㄴ) 및 (ㄷ)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 10. 22. 부터 2017 . 4. 14. 까지의 사용이익인 8,316,298원1) 및 2017. 4. 15.부터 (ㄴ) 및 (ㄷ) 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1,734,480원2) 의 비율에 의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효제

별지

1)【계산근거】 별지2기재 2011. 1. 1. 이후 (ㄴ) 및 (ㄷ) 토지에 대한 임료 총액 9,306,490원에서

2011. 1. 1.부터 2011. 10. 21.까지의 임료 990,192원(= 1,229,320원 X 294일/365일)을 제한
금액

2)【계산근거】 2017. 4. 15. 이후의 월 임료 144,540원 X 12개월